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0년 09월 14일

다산동장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**	고** 1958-08-24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자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9-14